

제356회 정례회  
2017. 6. 9.(금)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 3. 제안이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16.1.1)에 따라 기존 도립대학 특별회계 편성 예산 중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미래관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었던 한시적 유예규정을 사업 종료(16.12.)에 따라 정비코자 함

※ 도립대학은 2016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를 폐지, 대학회계로 편성 운영 중

## 4. 주요내용

- 대학 특별회계 폐지 유예규정 정비 : 제11조의 2
  - (제11조의 2) 미래관 증축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대학운영 특별회계를 운영함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도립대학 미래관 증축공사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대학 특별회계 운영을 유예했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16. 1. 1.)에 따라,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회계연도부터 도립대학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 기존 도립대학 특별회계 편성 예산 중, 공기부족으로 계획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미래관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11조의2에 한시적 유예규정을 두어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음.

※ 제11조의2(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미래관 증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관 증축사업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학운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잡수입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미래관 증축사업비로 한다.

- 2016년 12월 미래관 증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11조의2는 그 실효성이 상실된 바,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다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 법적 문제는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타당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6. 12. ~ 2016. 9. 27.
  - ※ 2015년 1회추경예산에 편성, 공기부족으로 2016회계연도로 명시이월
- 사업규모 : 3개층 증축(지상 3~5층)
  - ※ 연면적 4,704.69㎡(기존 2,401㎡, 증축2,303.69㎡)
- 총사업비 : 40억원(공사비 37.87 설계비 1.6 감리비 0.4, 부대비 0.13)

## □ 추진경과

- 실시설계 용역 : '15. 6. 12. ~ '15. 12.
- 사업 착공 : '16. 3. 2
- 사업 준공 : '16. 9. 27 ※ '16.10.16 준공식
- 미래관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 : '16. 12. 27.

## □ 미래관 층별 배치

구 분	용 도	비 고
지하	기계실, 전기실, 장비실	기존
1층	합동강의실, 공동전산실, 강의실, 자동차정비실습실	기존
2층	총대의원실, 총학생회실, 체력단련실, 학생휴게실, 학보사·방송실, 식품과사무실, 실습실	기존
3층	실습실(어학실), 강의실, 동아리실	증축
4층	대회의실, 소회의실, 강의실, 동아리실	증축
5층	실습실	증축